#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사도법」이 개정으로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사도)의 구조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서 이도(里道)의 설치기준으로 완화가 가능함에 따라서, 사도설치 구조 기준을 성주군 조례로 제정하여 완화함으로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사도의 구조 규정(안 제2조)
○ 사도의 관리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감사실-4210(‘17. 5. 2.)〕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주민복지과-27985(‘17. 5.17.)]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17. 6. 1.~ ‘17. 6.21.]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